



醫學倫理의 基本原理

가톨릭中央醫療院長

金 昌 烈 신부

1. 倫 理 性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는 法則, 法度, 規則 또는 規範이란 것이 있다. 그 法則이나 規範은 우리의 행위 내지 生活을 規制한다.

物理界에 法則이 있듯이 (가령 重力의 法則, 慣性의 法則) 倫理界에도 역시 法則이 있다 (孝, 義, 愛等). 우리의 氣分에 左右되지 않고 우리의 願·不願에 相關없는 物理法則이 있듯이, 그와같은 倫理法則이란 것이 屢존한다.

倫理性(morality)은 이 倫理規範과 우리 人間의 行爲와의 關係에서 생겨난다. 그리하여 倫理的 善 또는 倫理的 惡이 實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倫理的 善惡의 尺度가 되는 윤리규범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倫理에서는 모든 倫理行爲의 궁극적 규범, 모든 倫理善의 原型은 不可變의 本性을 지닌 하느님 自身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規準은 창조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의 原型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그것은 人間이 아니고 하느님을 中心으로 하는 倫理體系다. 앞으로 醫學倫理의 基本原理로서 提示될 原則이 立脚하고 있는 基盤으로서의 <自然法>이란 것도 이 개념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自 然 法

우리는 自然法の 개념을 떠나서 醫學倫理를 云謂할 수 없다. 自然法論이야말로 가톨릭 倫理學의 根幹의 役割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自然法 思想의 內容은 한마디로 이러하다. 卽 <하느

님은 自己가 창조한 世界와 그 안에 있는 萬有를 위해 各 存在에 固有한 本性에 알맞는 目的과 法度を 制定했다. 피조물은 各己 이 규정에 順從함으로써 自己完成을 이룩하도록 되어있다. 無感覺한 有는 物理나 化學의 法則을 따라 作用하고 反應함으로써 그 規定에 順從하고 짐승은 本能의 支配를 받음으로써 그것에 순응한다. 그러나 人間은 自己本性의 構造를 探究하고 거기에 適合한 規範을 發見하여 自發의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는 스스로 立法^者이 되고, 被造世界를 다스리는 하느님의 立法에 參與하는 것이다>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S. Th.. I-II, q. 91, a. 2).

이러한 本性論은 많은 點에서 스토아 學派의 (conservatio = self-preservation) 理論에 結付된다. 卽 自然法은 靈的인 人格이 自己自身을 維持保存하려는 性向으로 理解된다. 그리하여 Thomas Aquinas는 모든 有가 永遠法 卽 하느님의 宇宙統治의 計劃理念 (現實世界를 다스리는 하느님의 命令意志)에 종속되어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自己 存在에 相應하도록 行爲할 內在的인 傾向을 지니고있다는 思想을 前面에 내세운다(natural propensities). 이것은 世界를 질서지우는 靈, 宇宙靈(nous)에다가 우리의 存在를 결부시키는 Stoa派의 理論과 부합한다. 사람은 靈的인 本性을 따라 行爲할 때, 다시 말하면 人間의 自然的 및 超自然的인 存在性에 의하여 要求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 自己의 存在를 유지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음식을 取하고자 하는 本性에 따라 살아야 肉體的 生命을 유지보존하듯이 사람은 同時에 靈的

인 本性에 따라 행위해야만 靈의인 人格으로서의 自己自身을 유지보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靈의 人格의 유지보존을 위해서 本能的 本性을 억제해야 할 때도 있다. 가령 手術後에 節食을 해야 할 때라든가 여러사람이 나누어먹어야 할 경우에서 처럼 배불리 먹고자하는 本能的 本性을 超克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여러가지 倫理的 原理 내지 原則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醫學分野에 있어서 根幹이되는 基本的 倫理原理들을 紹介하기에 앞서서 그 理解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自然法論의 두가지 主要特徵을 찾아보고자 한다.

3. 自然法論의 特徵

위에서 말한 自然法論에 있어서 特히 두가지 要點이 注目된다. 하나는 自然法の 規範을 하느님의 意志와 同一視하는 點이고, 다른 하나는 이 첫째 要點에서 나오는 하나의 結論으로서 自然法은 하느님의 法, 永遠法에의 人間理性의 參照이 나만큼 不變한다는 點이다. 勿論 人間이 自然 本性의 眞正한 構造를 發見하는 過程에서 進歩나 誤謬가 있을 수 있고, 自然法の 內容에 관한 지식을 習得함에 있어서 發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自然法の 內容 自體는 客觀적으로 不變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M. T. Cicero의 有名한 文句 <Natura non mutatur>에도 反映되어 있다.

一 예를 <性>에서 들어보면 <사물의 本性에 새겨진 대로의 하느님의 창조 目的을 찾는 가운데, 性的 本性안에 不變하게 새겨진 目的은 무엇인가? 그것은 種族保存이다. 따라서 性行爲마다 세상에 새 生命을 가져오도록 指向되어 있다. 그런 故로 하느님은 人間の 本性을 通하여 사람이 出産目的을 不可能하게 만들 어떠한 方法으로 性を 사용하기를 禁止한다. 그리고 이 理致는 不變이다.> 이렇게 말한다.

결국 이 體系는 모든 人間을 時空을 超越하여 支配하는 普遍的인 倫理規範의 根據를 人間の 同一 本性과 本質에서 찾는다. 卽 不變의 本質이란 것이 있어서 確固한, 언제나 우리 人間에게 要求해오는 本質的 價値, 卽 道德律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 自然法論의 또 다른 特徵은 첫째 特徵의 하

나의 論理的 歸結로서 倫理的 諸價値 사이에는 何等 갈등이나 충돌이 없다고 主張하는 點이다.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物理的 價値領域에 限한 것이고 倫理的 價値의 次元에는 該當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倫理的인 意味로 完全無缺하게 秩序잡힌 宇宙안에 自然法이 새겨졌다고 하는 思想에 뿌리박고 있는 立場인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自然法안에 倫理的 權利 및 義務가 調和이론 序列로 明白하게 組立 構成되어 있어서 倫理的 價値들이 충돌할 理가 없게 된다. 완전무결하게 질서잡힌 自然法の 要求에 人間の 意志가 符合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倫理的 價値 또는 反價値(moral value 또는 disvalue)가 생겨나게 된다.

비록 自然法の 要求에 관하여 主觀的으로 疑心이 생길 수 있지만 客觀적 영역에서는 충돌이나 갈등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복잡한 狀況에 處해서도 人間の 行爲가 客觀적으로 타당한 윤리적 해결 原理에 부합하기만 하면 善하다는 것이다. 우리 人間の 無知나 過誤나 不完全으로 行爲의 選擇原理를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고, 보다 작은 惡 또는 가장 작은 惡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놓여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其實 價値의 충돌이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倫理學을 <客觀的 倫理學 (objective moral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勿論 이 理論은 어떤 具體的 個別的 行爲가 많은 結果를 낳을수 있다는 사실을 是認한다. 그 結果는 善한 것도 있고 惡한 것도 있다. 더구나 <本質적으로 惡하다>는 烙印이 찍혀진 것도 있을 수 있다. 所謂 <二重結果의 原理(principle of double effect)>가 活用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萬一 좋은 結果가 나쁜 結果를 招來할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으면 <本質적으로 惡한 結果(intrinsically evil effect)>를 直接 意欲하지 않는 限 問題의 行爲는 倫理的으로 正當化된다. 要求되는 조건이 다 채워졌다면 그 行爲는 善한 것이다. 投藥의 結果 일어난 流産이라든가 多數 民間人의 殺傷이 따를 폭격같은 경우에 따르는 惡은 倫理的인 것이 아니고 物理的인 것일 뿐이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 倫理體系는 복잡한 윤리 상황아래서도 倫理的 價値의 충돌이 없다는 것, 비록 物理的 善과 惡은 매우 복잡하게 상충할 수 있어도 倫理的 義務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 理由는 질서정연한 道德律의 序列(hierarchy of values)에 맞추어 人間의 意志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可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主張한다.

4. 醫學倫理의 基本原理

아래 紹介하는 醫學倫理의 다섯가지 基本原理는 自然法에 立脚한 것으로서 여러가지 特殊한 醫學倫理問題 解決에 맞먹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① <모든 人間은 살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온갖 計劃的 殺人은 倫理的 惡이다. 그것은 個人的 生存權을 侵害하고, 家族이나 親知들의 故人에 대한 愛情이나 救濟의 權利를 侵犯하며 共同體의 平和와 秩序를 害치는 행위이다 殺人의 結果로 社會 自體의 存立이 위태롭게 된다. 이 基本權의 侵害는 오늘날 우리 周邊에서 盛行되고 있다. 人生의 꽃봉오리에게 행해지기도 하고 (落胎), 이른바 <生存의 價値가 없는 生命>에 행해지기도 하고 (安樂死), 人間 繁殖에의 간섭으로 행해지기도 한다(不妊手術). 그리하여 避하기 어려운 內面的論理로써 大量殺人에도, 그리고 마침내 온갖 秩序잡힌 共同體生活의 파괴에도 이끌어 가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生存權은 完全한 意味로 理解되지 않으면 안된다. 殺人만이 非道德的인 것이 아니라 身體의 一部切斷, 損傷, 不法의 肉體 損傷으로 인하여 生命을 위협에 빠지게 하는 일 (外科手術, 生體實驗) 따위도 倫理的으로 변호할 수는 없다. 더우기 生命을 完全한 意味로 擴大 해석하면 人間의 精神的 生命도 역시 生命이다. 이 精神的 生命은 肉體의 건강보다 훨씬 더 重要하기 때문에 이 生命을 損傷하는 행위는 모두 重罪이다 (催眠術).

한마디로 사람의 生命은 다만 損傷하지 말아야 할뿐 아니라 醫療人이나 各個人은 힘자라는데까지 積極的으로 이를 養護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모든 人間은 正義를 要求할 權利가 있다.>

따라서 患者는 醫師에 대하여 權威있는 良心的 處置를 要求할 權利가 있다 (患者 取扱에 慎重을 期할 醫人의 義務). 병원의 醫師나 從業員들은 병원 근무자로서 그 任務와 職責을 充實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병원 資材 取扱에 慎重을 期할 의무).

③ <모든 人間은 眞實을 알 權利가 있다.> 따라서 明白한 虛偽를 말하는 것은 倫理的으로 惡한 일이다. 그것은 人間의 理性的 本性에 相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眞實을 알 權利가 絕對的인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모든 경우에 온갖 完全한 眞實을 알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는 自己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알려주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自由이다. 眞實을 알 權利란 것은 正義와 사랑으로써 自己에게 傳達되어야 할 일을 알 權利인 것이다. (職業上의 秘密, 病狀告知).

④ <人間의 能力과 힘은 그 本性의 目的에 따라 利用되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 이 能力들이 故意로, 또는 意識的으로 그 內在의 本性規定에 어긋나는 目的에 濫用된다면, 그 濫用은 倫理的으로 惡하지 않을 수 없다 (産兒制限, 人工授精).

⑤ <惡은 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行해질 수 없다.> 卽 善한 目的이라고 해서 道德的으로 惡한 手段을 利用할 수 없다. 萬一 이 原則이 全面的으로 그리고 無制限으로 認定되지 않는다면 結局 惡行爲와 混亂에 대하여 門戶를 開放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가령 家庭의 平和와 子女教育을 위해서 제으름뱅이 술주정꾼인 男便을 殺害하거나 孝道하기 위해서 또는 學費마련을 위해서 훔쳐도 괜찮겠는가? 이에 대한 倫理的 判斷은 明白하다. 目的 (家庭의 平和, 孝道, 學問)이 제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惡한 手段이 善한 手段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醫師가 倫理的 惡의 土臺위에서 좋은 手段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決코 倫理的으로 許容될 수 없다. 그러나 이 原則이 위에 말한바 있는 所謂 <二重結果의 原則>과 混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附言하는 바이다 卽 善과 惡의 兩結果가 豫想될 경우에, 善한 結

果가 惡한 結果의 媒介로 나오지 않고 比例的인 重大理由가 있으면 善한 目的(志向)으로 善行爲 또는 中性行爲를 할 수가 있다.

一 例로 醫師가 妊娠 4개월의 婦人을 診察했을 때 子宮에 癌을 發見하여 治療上 當장 外科的 剔去手術을 해야 한다는 判斷을 내렸다고 하자. 手術結果 當然히 胎兒의 生命은 없어진다. 그러나

그 手術은 위의 네가지 條件을 채우기 때문에 倫理的으로 許容되는 것이다.

以上の 다섯가지 基本原理는 Hippocrates 宣誓의 內容과도 符合된다. 그 內容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根據는 結局 위에서 說明한 <自然法>이다.

히포크라테스 宣誓

이제 醫業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 나의 生涯를 人類奉仕에 바칠 것을 嚴肅히 誓約하노라.
- 나의 恩師에 對하여 尊敬과 感謝를 드리겠노라.
- 나의 良心과 威嚴으로써 醫術을 베풀겠노라.
- 나의 患者의 健康과 生命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患者가 알려준 모든 內情의 秘密을 지키겠노라.
- 나는 醫業의 高貴한 傳統과 名譽를 維持하겠노라.
- 나는 人種, 宗教, 國籍, 政黨, 政派 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超越하여 오직 患者에게 對한 나의 義務를 지키겠노라.
- 나는 人間의 生命을 그 受胎된 때로부터 至上의 것으로 尊重히 여기겠노라.
- 비록 威脅을 당할지라도 나의 知識을 人道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以上の 誓約을 나의 自由意思로 나의 名譽를 받들어 하노라.